

대법원 1987. 11. 24.선고 87누117 판결

【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】, [집35(3)특,585;공1988.1.15.(816),178]

【판시사항】

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등이 의사의 지도하에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을한 것이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【판결요지】

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 제1조, 제3조,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채혈, 채변 기타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 등의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【참조조문】

의료법 제25조 , 의료기사법 제1조 , 제3조 ,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상고인】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【피고, 상고인】 서울특별시장

【대상판결】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7.1.12 선고 86구480 판결

【주문】

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[이유]

상고이유를 본다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울 도봉구 ○○동 에서 △△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보건증발급지정업소로 지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병원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등으로 하여금 검진차량에 방사선기구 등 의료기기를 싣고 보건증발급대상 업소를 방문하여, 의사인 원고의 현장에서의 지시감독도 없이 임의로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무자격자로 하여금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3개월 동안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, 원고는 위 병원의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간호보조원들과 함께 검진대상자들이 종사하는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며 피부병은 그 자리에서 시진(한문생략)하고 그 밖에는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로 하여금 채혈, 채변 기타 가검물채취 및 X선촬영을 하게 하고 이를 병원에 가져와 검사·판독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증을 발급하여 왔으며, 한편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 제1조, 제3조,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원고의 지도하에 행한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.

기록에 비추어 볼 때 <u>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</u>,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.

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명희(재판장) 정기승 윤관